

■ 변경 대상펀드 : JP 모간 코리아트러스트 증권자투자신탁(주식)

- 신탁계약 -

	정 정 전	정 정 후
제 3 조 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③	<p>2. C 클래스 수익증권: 투자자의 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<u>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</u></p> <p>3. C - F 클래스 수익증권: 법 제 9 조 제 5 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(단, 법 제 9 조 제 5 항 제 4 호, 법 시행령 제 10 조 제 3 항 제 15 호 내지 제 18 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), 100 억 이상 개인, 500 억 이상 일반법인에게 <u>발행되는 종류형 수익증권</u></p> <p>4. C - W 클래스 수익증권: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계좌를 보유한 자에게 <u>발행되는 종류형 수익증권</u></p> <p>5. C - E 클래스 수익증권: <u>인터넷 판매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투자자에게 발행되는 종류형 수익증권</u></p> <p>6. C - S 클래스 수익증권: 투자신탁의 안정된 운용을 위해 25 억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에게 <u>발행되는 종류형 수익증권</u></p>	<p>2. C 클래스 수익증권: 투자자의 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<u>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</u></p> <p>3. C - F 클래스 수익증권: 법 제 9 조 제 5 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(단, 법 제 9 조 제 5 항 제 4 호, 법 시행령 제 10 조 제 3 항 제 15 호 내지 제 18 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), 100 억원 이상 개인, 500 억원 이상 일반법인에게 <u>발행되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</u></p> <p>4. C - W 클래스 수익증권: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계좌를 보유한 자에게 <u>발행되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</u></p> <p>5. C - E 클래스 수익증권: <u>투자자의 자격에 제한이 없고,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으며, 판매회사의 인터넷 판매시스템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투자자에게 발행되는 종류형 수익증권</u></p> <p>6. C - S 클래스 수익증권: 투자신탁의 안정된 운용을 위해 25 억원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에게 <u>발행되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</u></p>
제 5 조(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)	<p>① <u>이 신탁계약은 이 신탁계약의 체결일과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이 투자신탁의 등록을 완료한 날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</u></p> <p>② 이 신탁계약은 본조 제 1 항에 의한 효력 발생 일로부터, 이 투자신탁에 관하여 당사자간 <u>2007 년 6 월 27 일에 체결되어 있던 기존 신탁계약을 대체하고 이에 우선한다.</u></p>	<p>① <u>이 신탁계약은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이 신탁계약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.</u></p> <p>② 이 신탁계약은 본 조 제 1 항에 의한 효력 발생 일로부터, 이 투자신탁에 관하여 당사자간 <u>2009 년 4 월 16 일에 체결되어 있던 기존 신탁계약을 대체하고 이에 우선한다.</u></p>
제 6 조(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 좌수)	<p>이 집합투자기구를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 1 좌당 1 원을 기준으로 제 25 조에서 정한 기준가격(이하 “기준가격”이라 한다)을 적용하며, 설정할 수 있는 수종의 수익증권의 총 좌수는 <u>10 조좌로 한다</u></p>	<p>이 집합투자기구를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 1 좌당 1 원을 기준으로 제 25 조에서 정한 기준가격(이하 “기준가격”이라 한다)을 적용하며, 설정할 수 있는 수종의 수익증권의 총 좌수는 <u>제한을 두지 아니한다.</u></p>

	정 정 전	정 정 후
제 8 조(신탁금의 납입)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를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 제 6 조의 신탁원본액에 해당하는 투자신탁금을 <u>현금 또는 수표로</u>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집합투자업자는 제 7 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투자신탁금을 <u>현금 또는 수표로</u>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설정하는 날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1,000 좌당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당해 종류의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,000 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.</p>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를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 제 6 조의 신탁원본액에 해당하는 투자신탁금을 <u>금전으로</u>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집합투자업자는 제 7 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투자신탁금을 <u>금전으로</u>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설정하는 날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1,000 좌당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당해 종류의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,000 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.</p>
제 40 조(판매수수료)	<p>① 판매회사는 <u>A 클래스</u>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한다.</p> <p>②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(당해 종류 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1,000 좌당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,000 으로 나눈 금액)의 <u>100 분의 1</u> 을 초과한다.</p>	<p>① 판매회사는 <u>수익증권을 판매하는 경우</u>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.</p> <p>②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(당해 종류 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1,000 좌당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,000 으로 나눈 금액)에 <u>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선취판매수수료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A 클래스 수익증권: <u>납입금액의 1%</u></li> <li>2. C 클래스 수익증권: <u>해당사항 없음</u></li> <li>3. C - F 클래스 수익증권: <u>해당사항 없음</u></li> <li>4. C - W 클래스 수익증권: <u>해당사항 없음</u></li> <li>5. C - E 클래스 수익증권: <u>해당사항 없음</u></li> <li>6. C - S 클래스 수익증권: <u>해당사항 없음</u></li> </ol>
제 49 조(공시 및 보고서 등)	<p>⑦ <u>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,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서면으로 우송할 수 있다. 다만, 수익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다.</u></p>	<p>⑦ <u>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,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,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되며 판매회사를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교부한다. 다만,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,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시 또는 집합투자업자, 판매회사의 본·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것으로 투자자에게의 교부를 갈음할 수 있으며,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발송으로 교부한다.</u></p>

- 증권신고서

목	정 정 전	정 정 후
제 1 부. 3. 모 집예정금액	<u>10 조좌</u>	<u>이 투자신탁은 모집(매출)총액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.</u>
제 2 부. 8. 가. 투자대상 - 모	③ 파생결합증권 - 법 제 4 조 제 7 항의 규정에 의한 <u>파생결합증권</u> 으로서 국내주식 또는 해외주식을	③ 파생결합증권 - 법 제 4 조 제 7 항의 규정에 의한 <u>파생결합증권 ("파생결합증권")</u>

목	정 정 전	정 정 후
투자신탁의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	<u>기초자산으로 하는 것 ("파생결합증권")</u>	
제 2 부 . 10. 다. 기타 투자위험	오퍼레이션 위험: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폐장 및 개장시간의 <u>차이로 인해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에서 운용적인 위험이 국내투자보다 더 높습니다.</u>	오퍼레이션 위험: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폐장 및 개장시간의 <u>차이, 투자대상국가의 휴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에서 운용적인 위험 및 외환거래 위험이 국내투자보다 더 높습니다.</u>
제 2 부 . 11. 가.(2)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종류 및 종류별 가입자격	<p><b>C클래스</b> : 투자자의 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<u>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u></p> <p><b>C-F 클래스</b> : 법 제 9 조 제 5 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(단, 법 제 9 조 제 5 항 제 4 호, 법 시행령 제 10 조 제 3 항 제 15 호 내지 제 18 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), 100 억이상 개인, 500 억이상 일반법인</p> <p><b>C-W 클래스</b> :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계좌를 보유한 자</p> <p><b>C-E 클래스</b> : <u>인터넷 판매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투자자</u></p> <p><b>C-S 클래스</b> : 투자신탁재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25 억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</p>	<p><b>C클래스</b> : 투자자의 자격에 제한이 없으며, <u>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</u></p> <p><b>C-F 클래스</b> : 법 제 9 조 제 5 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(단, 법 제 9 조 제 5 항 제 4 호, 법 시행령 제 10 조 제 3 항 제 15 호 내지 제 18 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), 100 억원이상 개인, 500 억원이상 일반법인에게 발행되며 <u>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</u></p> <p><b>C-W 클래스</b> : 판매회사의 일임형Wrap계좌를 보유한 자에게 발행되며 <u>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</u></p> <p><b>C-E 클래스</b> : <u>투자자의 자격에 제한이 없고,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으며, 판매회사의 인터넷 판매시스템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투자자에게 발행되는 종류형 수익증권</u></p> <p><b>C-S 클래스</b> : 투자신탁재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25 억원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에게 <u>발행되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</u></p>
제 2 부 . 12. 나.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방법	<u>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238 조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,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.</u>	<u>법 제238조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함에 있어, 집합투자업자는 평가시점의 최종시가 또는 평가일의 공정가액(신뢰할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)을 사용하여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합니다. 이 투자신탁은 시차가 있는 시장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만약 평가시점 이전에 해당 시장의 당일 최종시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, 직전의 최종시가를 사용하여 외화자산을 평가하게 됩니다.</u>
제 2 부 . 14. 나.(2)투자신탁에 대한 과세	<u>다만 투자신탁이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권거래세, 취득세, 등록세 등의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.</u>	<삭제>

부	정 정 전	정 정 후
제 2 부 . 14. 나. (3)수익자에 대한 과세 - 원천징수 원칙	<p>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국외 주식(단, 채권, 수익증권,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, REITs와 같은 투자신탁 또는 펀드의 수익증권, 또는 해외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증권 등의 예외가 있음)의 평가이익 및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2009. 12. 31 까지 비과세됩니다. 또한,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도이익이 비과세소득인 경우에 한하여 대한민국 개인거주자는 이러한 이익금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을 받게 됩니다.</p> <p>한국 수익자들은 투자신탁에 대해서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상장주식의 평가 및 매매로 인한 손실이 과세대상인 이자, 배당 또는 외화수입 등으로 인한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합니다.</p>	<삭제>
제 2 부 . 14. 나. (4)수익자에 대한 과세율	<p>*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최고 38.5%의 <u>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.</u></p> <p>* 법인의 경우 해당 소득은 전체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현재 최고 24.2%(2010년 이후 최고세율 22.0%로 인하)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세의 적용을 받으며, 이미 원천징수 된 세액은 공제됩니다.</p>	<p>*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최고 38.5%(2012년 이후 최고세율 36.3%로 인하)의 <u>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.</u></p> <p>* 법인의 경우 해당 소득은 전체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현재 최고 24.2%(2012년 이후 최고세율 22.0%로 인하)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세의 적용을 받으며, 이미 원천징수 된 세액은 공제됩니다.</p>
제 5 부 . 3. 가. (2) 자산운용보고서	<p><u>자산운용보고서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합니다. 다만, 전자우편을 통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에 대해서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.</u></p>	<p><u>자산운용보고서는 집합투자업자,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되며 판매회사를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교부합니다. 다만,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,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시 또는 집합투자업자, 판매회사의 본·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것으로 투자자에게의 교부를 갈음할 수 있으며,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발송으로 교부합니다.</u></p>